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 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2020. 8. 7
[조례 제931호]

제1조(「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조(「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증평군 건축 조례」의 개정)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현금”을 “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증평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증평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7조(「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제7조의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10조(「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1조(「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